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문화진흥과

( 2017. 4. 4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유 준 상 ]**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3월 27일(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# 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3월 27일(월)

### 4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

### 5. 개정이유

-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각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 
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  
고자 함

## 6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시 사용예정일의 60일까지 납부하도록 변경  
(제13조제1항)
- 나.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규정 마련  
(제13조제1항)
- 다.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공연대관의 경우 대관료 할증  
(별표 제1호 가목(8))
- 라. 문화동 증축부분 스튜디오2(2층), 스튜디오3(3층)의 사용료 신설  
(별표 제1호 나목(6))
- 마.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 주차요금을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30분까지  
무료로 변경하고 일부 주차료 상향조정(별표 제1호나목(7))
- 바. 기타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일부기준 변경(별표 제2호나목(1),(2))

## 7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공연장·전시실, 문화·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 복합공간인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각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후 사용일이 임박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, 시설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주차료 면제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해결방안 및 문화동 증축 공간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다만, 수수료 징수기준이 너무 낮아 주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 자들과 마찰이 없는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, 마포아트센터 본연 의 출범취지에 맞게 체육시설 및 공연장 운용의 개선은 꾸준히 노력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또한, 별표 제1호나목(6) 참고에 “단, 스튜디오3의 경우 식당 등으 로 장기 사용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른다.” 는 항목은 스튜디오3이 식당 용 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사료됨.